

영등포구의회
제129회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』

檢 討 報 告 書

2007. 7. 6.

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제안일자 및 제안자

- 제안일자 : 2007. 6. 25.
- 제 안 자 : 영등포구청장

개정(제안)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재난관리 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중 노량진·구로경찰서장 제외(안제4조제1항)
- 위원회 위원장·통제관·자문단 및 간사 등 부서장 변경(안제4조제1항·제14조제1항·제7조제1항·제25조제2항·제32조)

관련법규

- 『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』
-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』 : 2007.4.5 개정·시행

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

- 준비중에 있음.

검토의견

- 2007.4.5.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』가 개정되어 재난관리업무의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

- **안 제4조제1항에는**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우리구 안전관리 위원회 당연직 위원중 노량진·구로경찰서장을 제외하였으며

- **안 제4조제1항·제14조제1항·제17조제1항·제25조제2항·제32조에는** “행정국장 또는 재난관리담당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“재난관리담당과장”을 “치수방재과장“으로 부서장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7. 7. 6.

보고자 : 이 남 식